



민심은 사형제 폐지·동성혼 인정엔 부정적

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‘사형제 폐지’와 ‘동성혼 인정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중앙일보가 창간 52주년을 맞아 지난 17~1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, 국민의 66.1%가 ‘사형제 폐지에 반대’한다고 응답했다. 개헌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도 사형제 폐지에는 대부분 반대했다.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중 66.2%, 반대 응답자 중 73.2%가 사형제 폐지를 반대했다. 연령별로는 19~39세(69.5%)에서 반대 여론이 40~60세 이상(64.0%)보다 약간 앞섰다.

사형제 존폐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. 헌법재판소는 사형을 합헌으로 보고 있다. 헌재는 1996년 사형을 최고형으로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“공공 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”고 결정했다. 당시 합헌 7명, 위헌 2명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.

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0년 헌재는 다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판했다. 광주고법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다. 이번에는 5(합헌) 대 4(위헌)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. 위헌 의견이 2명 더 많아진 셈이다. 헌재는 당시 “사형제가 헌법이 예상한 형벌의 종류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. 사형제 유지로 범죄예방이나 생명보호와 같은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”고 판시했다. 그러나

위헌론을 편 재판관들은 “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”는 견해를 제시했다.

사형제에 관한 한 외국의 헌법 사례도 다소 엇갈린다.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 66조 1항에서 ‘누구든지 사형을 선고받지 아니한다’고 명시해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다. 스위스 헌법 10조에는 ‘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. 사형은 금지된다’고 했다. 독일은 기본법 102조에 “사형은 폐지된다.”고 돼 있고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조는 “누구든지 사형언도를 받거나 사형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.”고 규정했다.

반면 일본은 “생명,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정에 있어 최대한 존중된다.”고 했다. 공공복리에 반하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. 일본은 여전히 사형제 시행국이다.

마찬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‘동성혼’의 경우 국민의 63.1%가 반대한다(매우 반대 46.1%, 약간 반대 17.0%)고 응답했다. 찬성은 34.4%(매우 찬성 8.7%, 어느 정도 찬성 25.7%)였다.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성혼 반대 비율도 높아졌다. 반대 의견은 각각 19~29세(30.1%), 30~39세(45.8%), 40~49세(63.9%), 50~59세(75.4%), 60세 이상(88.4%)으로 나타났다.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혼에 찬성하고,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은 셈이다. 현행 헌법에는 ‘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된다(제36조)’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.

[중앙일보 인용]